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안 제4조)

다.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 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4.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 다회

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개정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